

2006년 7월 2일 시행
제12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호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6. 7. 3.(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6. 7. 3.(월) 10:00 ~ 2006. 7. 6.(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6. 7. 19.(수)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1과목 50문】

【헌법 20문】

【문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은? (다수의견에 의함)

- 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
-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④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수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 2】 국회의 회의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동일 안전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 ③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 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국회의 노동위원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문 4】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

【문 5】 갑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의 법률조항(이하 이 문항에서 제A조라고 하자)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한편 검사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갑은 자신이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A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중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문 6】 법관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아니한다.
-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문 7】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에 다음 중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
-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 ④ 복수정당제를 폐지하는 것
-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문 8】 다음 중 제헌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 ②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 ③ 전문(前文), 10장, 103조로 구성되었다.
- ④ 노동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권점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 ⑤ 법원은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문 9】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따름)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교통범죄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불응시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

【문10】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 ④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 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1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유죄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 경우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사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 ③ 법원의 제정·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 ④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

【문12】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국민의 근로의 의무
- ②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③ 국민의 헌법준수의 의무
- ④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특칙
- ⑤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문13】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탄핵심판권 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③ 정당해산심판권 ④ 권한쟁의심판권
⑤ 헌법소원심판권

【문14】 다음 중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④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⑤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문15】 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 ② 국가의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 ③ 정당의 해산
- ④ 국선변호인제도
- ⑤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

【문16】 다음 중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과 판례에 따름)

- ① 언론·출판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 ④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열을 할 수 있다.

【문17】 다음 중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데 반하여,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다.
- ②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민(people)과 동일한 개념이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 ⑤ 대한민국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18】 다음 중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평화적 생존권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③ 신체의 자유 ④ 청원권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19】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 ②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 ③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 ④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
- ⑤ 지하자원 등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및 국가의 보호

【문20】 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 ②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 ③ 단순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의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상법 30문 】

【문2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②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문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므로 그 인원수는 2명 이하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반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
-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수령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문23】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주식회사는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모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
-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결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
-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24】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와 배서가 필요하다.
- ② 주식의 양도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언제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문25】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신주의 발행금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②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③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26】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가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 ②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④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 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27】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문28】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즉시 개시한다.
- ②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9】 각종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 ③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④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30】 어음·수표의 소구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환어음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 발행인과 그 보증인이다.
- ② 모든 소구의무자는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인수의 거절이 있을 때에는 소구를 할 수 있다.
- ④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 다시 지급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구권을 잃는다.

【문31】 상법상 선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선박을 인도하면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생긴다.
- ③ 등기선에 관한 권리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 ④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 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문32】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 ③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 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채당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문3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문34】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 ④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⑤ 회사설립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문35】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총액에 관한 상법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에 대하여 몰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3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어음상 권리의 시효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⑤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도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37】 상법상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 ②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③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④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가 고지할 사항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38】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발행 당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할 수 없다.
- 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문39】 상법상 합병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병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② 합병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합병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 ④ 합병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합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문40】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41】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 ④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 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문4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어음금액은 한글로만 표시하여도 유효하다.
-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거나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

【문43】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를 한 경우 그 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언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문44】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⑤ 객의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5】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인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입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문46】 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 즉 무효인 불완전어음이 아니고 백지어음으로서 유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 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문47】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상인이 선임한 지배인이더라도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모든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48】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 ②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유가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 ④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 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문49】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문50】 주식회사의 청산인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③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④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판례에 의한다)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므로, 신축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었으며 지하 1층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 ② 민법상 토지에 고정된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도 동산이다.
- ③ 민법상의 물건이란 유체물과 전기 그리고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 ④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부착시킨 주유기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토지의 사용대가인 임대료는 물론, 자전거를 사용하며 지급하는 사용료도 법정과실이다.

【문 2】 A가 2006. 1. 1.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 그 부인 B와 큰아들 C, 그리고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아내 E와 딸 F가 있었는데 F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다. 그 상속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가산되지만,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부인이나 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D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은 없다.
- ②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속분은 모두 합하여 D의 원래 상속분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 ③ D의 상속분에 대하여 E와 F가 대습상속을 함에 있어서 상속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1.5 : 1이 된다.
- ④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 ⑤ 위 상속재산은 B 내지 F의 공유로 된다.

【문 3】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온 경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은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③ 종교에 관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에 대표자인 회장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 4】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재산상속
- ② 유증
- ③ 증여
- ④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⑤ 유류분권

【문 5】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③ 변제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건이 동일한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문 6】 다음 중 제척기간이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④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 7】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강행규정(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것은?

-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

【문 8】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만이 인정될 뿐이다.
-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법령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③ 민법 소정의 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소정의 이율은 연 6%이다.
- ④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유류분의 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피상속인의 외손자 ② 피상속인의 삼촌
- ③ 피상속인의 아들 ④ 피상속인의 어머니
- ⑤ 피상속인의 남편

【문10】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점유는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③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한 때에는 그 타인은 간접점유자, 지시를 받는 자는 직접점유자가 된다.
- 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11】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 ①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

【문1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판례는 현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손해삼분설에 따르고 있다.
- ②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한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
-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13】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지만,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
- ② 미성년자의 성장이 남보다 빨라서 외모 자체만으로는 성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에 대한 취소청구는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선고로 간주되는 사망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미성년자와 성년인 부모가 동승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신체의 발육이 미약한 미성년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전지(戰地)에 임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

【문14】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토지는 부동산이다.
-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③ 동산 간에는 부합할 수 없다.
- ④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문15】 갑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통설에 따름)

- ①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된다.
- ④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 ②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 ⑤ 건축주가 직접 신축건물을 건축한 경우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 ② 채무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서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 ③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 ④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이행인수라고 한다.
- ⑤ 제3자가 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와 더불어 함께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도록 하는 계약을 계약가입이라고 한다.

【문18】 다음 중 소급효가 없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시효취득
- ② 무효행위의 추인, 혼인의 취소
- ③ 계약의 해제, 무효행위의 추인
- ④ 시효취득, 혼인의 취소
- ⑤ 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문19】 다음 중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 ① 성년 남자만이 종종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 관습이다.
- ②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이다.
- ③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이다.
- ④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 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문20】 다음 중 주의의무의 정도가 가장 가벼운 것은?

- ① 수입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
- ②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 ③ 영업상 무상으로 물건을 수치한 상인의 임치물 보관의무
- ④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 ⑤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점유시 주의의무

【문2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인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④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 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22】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임치권 ④ 저당권 ⑤ 전세권

【문23】 다음 규정들 중 현행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대습상속
- ② 유언에 의한 입양
- ③ 상속분의 제3자에 대한 양도
- ④ 제사 주재자의 분묘 등의 승계
- ⑤ 공동상속인 중 부양자의 기여분

【문24】 다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②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③ 주금납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한 상계
- ④ 양 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 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문25】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의 성립으로 발생한다.
- ③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26】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행위무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③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를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문27】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의 무효
-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의 취소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 ④ 등기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28】 경계가 인접한 경우에 관한 소유권자 간의 이해 조절에 관한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 ①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문29】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신탁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신탁법이라고 약칭함)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 ② 신탁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신탁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신탁등기하도록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 ③ 다만 위 ②의 경우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는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 ④ 또한 위 ②의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 ⑤ 또한 위 ②의 경우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인 신탁법시행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탁등기의무가 면제된다.

【문3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바른 것은?

-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31】 친족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 ② 친족회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두게 되며, 대표자는 친족회원 중에서 연장자가 맡는다.
- ③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 ⑤ 후견인으로서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문3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④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 이후로는 그 법률행위가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의 소급효는 없다.
- ⑤ 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문33】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3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공동피고로 될 수 없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 ④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문35】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문36】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중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④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문37】 다음 중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인
-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
-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④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⑤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문38】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②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된다.
- ④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증서의 교부전이라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3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건축업자가 잔대금지급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 ④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문40】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②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부부재산약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 ④ 부부재산 약정상의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부부가 혼인 중에 한 재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도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적법 10문】

【문41】 다음은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 ②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다.
- ③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 ④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한국인 모(母)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姓)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건본인의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문42】 다음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등·초본이 필요한 때에 호적상 사망(실종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② 일본국 관공서가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호적등·초본을 청구한 경우,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초본을 송부하되,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 ③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호적등·초본을 직접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 ④ 위임인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 ⑤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문43】 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호주승계로 인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개명이 아닌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호적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 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문44】 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者)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
-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④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 ⑤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5】 다음은 호적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 본란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 ⑤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류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문46】 다음은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호적상 친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1항)와 재판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2항)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 ③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⑤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하고, 친권자의 본적이 미성년자의 본적과 다른 때에는 친권자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도 기재한다.

【문47】 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
- ② 창설적 신고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인지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은 구술로 신고하든 서면으로 신고하든 위임에 의한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사건본인의 본적지에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인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히무효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할 수 없다.
- 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문48】 갑남과 을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인 바, 두 사람은 2005. 5. 16.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우송하였다. 같은 해 5. 18. 갑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녀는 사망신고서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같은 해 5. 22. 호적관서에 제출하였고, 한편 혼인신고서는 같은 해 5. 23. 호적관서에 도착하여 접수·수리되었다. 이 경우 갑남과 을녀의 혼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 ① 2005. 5. 16.
- ② 2005. 5. 18.
- ③ 2005. 5. 22.
- ④ 2005. 5. 23.
- ⑤ 혼인신고서가 사망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문49】 다음은 호적에 기재하는 인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호적(제적)이 없는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포함)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포함)을 따를 수 있으나 그 명(성을 제외)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하여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적회복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여 호적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문50】 다음은 입양신고 및 파양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호적선례에 의함)

-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서면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양가의 호주를 승계할 경우가 아니면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 ④ 전호주가 사망하여 양자가 호주승계를 한 후 생존한 양모와 파양한 경우에는 파양의 효력은 양자와 양부모 전체에 미치므로 파양으로 인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다.
-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고,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2006년 7월 2일 시행
제12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6. 7. 3.(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6. 7. 3.(월) 10:00 ~ 2006. 7. 6.(목)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6. 7. 19.(수)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 부동산경매에서의 매각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는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매각시에는 전의 매수인도 최고가매수신고를 할 경우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③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일괄매각절차에서는 과잉매각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문 2】 민사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의 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집행관이 실시한다.
- ④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문 3】 다음 중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으로 가장 틀린 설명은?

- 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요구종기 전까지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현행법상으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이에 해당된다.
- ④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⑤ 주택의 경우 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4】 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부명령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③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경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⑤ 현물분할이 어려운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 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이다.

【문 5】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이어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법원과 기록이 있는 법원 모두에 할 수가 있다.
- ③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개시결정 이후 매각대금의 납부시까지 발생한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 ④ 임의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⑤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문 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 ②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납부는 효력을 잃는다.
- ③ 채무인수의 경우에 매수인이 차액을 납부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채무인수의 대상인 권리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매수보증금 지급이 아닌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낸 것만으로는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7】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불분명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미칠 수 있다.
-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 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문 8】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임차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대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 ③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됨이 원칙이다.
- ⑤ 임차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 9】 다음은 민사집행절차에서 보증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 사이에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에 의한 담보나 보증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제공하는 보증
-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 ③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따라 매수신고 전에 채무자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등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
- ④ 채무자가 가집행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
- ⑤ 가압류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가압류해방금액

【문10】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공탁을 할 수가 있다.
-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에 관하여 거둬지는 압류명령의 송달 등으로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금전채권의 전액을 즉시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
- 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압류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문1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절차개시의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 ②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 ③ 법원이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한 경우에 그에 따라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관 등이 법원에 제출한 때
- ④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 ⑤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

【문12】 다음 중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②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나 교사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13】 다음 중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중 하나이다.
- ②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다.
- ③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문14】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문15】 다음은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얻어진 배당재단에 대하여 배당을 하려고 보니 배당요구 등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만 하는 채권은 ①집행비용, ②당해세, ③근로관계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④근로관계로 인한 임금(③항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임), ⑤일반채권, ⑥채무자의 재산형인 벌금으로 조사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배당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단, 같은 순위는 함께 기재함)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① → ③ → ② → ④ → ⑤,⑥
- ② ① → ② → ③ → ④ → ⑤,⑥
- ③ ① → ②,③ → ④ → ⑥ → ⑤
- ④ ① → ②,③ → ⑥ → ④ → ⑤
- ⑤ ① → ③ → ④ → ② → ⑤,⑥

【문1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권리취득과 관련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매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다른 사람이 취득한다.
-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된 경우라도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상소심의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감정평가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경매신청 당시에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 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이 된 경우에 등기부의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고 감정평가도 평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그 지분비율을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되었다면 매수인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문17】 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와 관련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받은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이중압류가 성립한다.
- ② 후행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선행집행장소를 수색하여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이중압류가 성립되면 선행집행채권자와 후행집행채권자 각자가 선행압류물과 추가압류물 모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선행압류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재판이 있을 후 후행집행신청에 따라 추가압류한 경우에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후행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 전액이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18】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단,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권자로 이를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
-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된 전세권자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집행법원에 이를 증명한 자
-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의 다른 공유자

【문19】 다음 중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본안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②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③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 ④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 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문20】 다음 중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된다.
- ②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③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가압류 신청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문21】 갑은 갑의 채무자인 을과 건축업자인 병 사이에 맺어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수인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갑이 취할 보전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②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③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④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 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문22】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금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③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 ④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문23】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효법상 무효이고,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전부금지금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위하여는 전부채권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의 촉탁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전부명령 당시에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었다라도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24】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의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문25】 다음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집행법원)에서 항고장 또는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 ② 가압류권자가 항고하였다.
- ③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④ 매각허가결정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⑤ 배당요구종기 전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항고하면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문26】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각까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다.
- 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문27】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
-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하는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의 목적은 압류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 ④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한 압류는 압류명령에 기초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 ⑤ 저당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28】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서상 청구금원의 표시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 기재가 되었더라도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 ②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금원의 확장신청으로 잔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자는 강제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가 없다.
- ④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권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잔액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문29】 다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
- ②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경우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④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30】 다음은 채권자의 증명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선택적급부인 경우
- ②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의무가 해제조건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③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채권자의 선택적급부에 매인 경우
-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급부의 이행이 도래되지 않은 불확정한 기한에 매인 경우
- ⑤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경우에 강제집행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문31】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입목에 대한 강제집행
- ③ 전세기간 만료 전의,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 ④ 공장재단에 대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 ⑤ 용익물권인 지역권에 대한 강제집행

【문32】 다음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은 늦어도 매각기일공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일괄매각을 하는 경우에 각 물건별로 권리관계가 다른 때에는 각 물건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일괄매각하는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선고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 ⑤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문33】 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라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 ②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규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34】 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신청의 액은 반드시 최저매각가격 이상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 ③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함이 없이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 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문35】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월 120만 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 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신주의 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액이 부당한 때에 회사 또는 그 주주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감청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 ②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 사건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주의 주주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⑤ 신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권결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37】 상업등기의 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
-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
-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 장에 간인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라도 그 1인만이 간인할 수는 없고,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한다.
- ④ 수 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⑤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더라도 각 신청서마다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38】 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관할법원이 수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관할지역이 경계불명 등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동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되,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⑤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기는 하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문39】 다음의 각종 주식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출자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신주발행시에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와 자본의 총액, 미상각액에 대한 등기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본의 총액란에 전부 기재한다.
- ③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한다.
- ⑤ 전환주식은 전환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 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면 된다.

【문40】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 회사계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 ②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배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하고, 해산 후에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들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다.
- 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문41】 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 ②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문42】 민법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에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 ③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법인은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대리인은 등기할 수 없다.
- 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사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43】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또는 변경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란에 한다.
- 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문44】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민원인은 타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본형태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람할 수도 있다.
- ④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과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45】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물출자에게 유리하게 배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재판은 할 수 없다.
- ②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융기관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변경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 ④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회사성립 전에는 총사원이 신청하고, 회사성립 후에는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

【문46】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보충사건의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원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 ④ 재판상 대위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허가재판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⑤ 상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산과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청산인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는 아니한다.

【문47】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 ②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입할 수 있고, 한편 공탁물보관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 ⑤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문48】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신청사건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49】 지배인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본점의 지배인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신청으로 본다.
- 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50】 상법 제496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②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 ④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 ⑤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4과목 50문】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 ③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유류저장탱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문 2】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임차권등기시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②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는 속하지 않는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3】 전세권등기에 관한 최근 등기선례에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한 경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건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 4】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를 수 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5】 다음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관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 ②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③ 종중이 그 대표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첨부서면에 대한 공증 및 전임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
-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의서에 사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 6】 환매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환매권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목적물을 매각에 의하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저당권등기에 선행하는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 ③ 환매권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관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고,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권등기신청도 가능하다.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⑤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를 한다.

【문 7】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여야 하며 이에 관한 공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문 8】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국유 부동산 중 시장·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다.
- ③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첨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 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10】 다음은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등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문11】 다음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근저당권변경계약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등기관리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 ⑤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문12】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 지번
-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 ④ 대지권의 비율
- ⑤ 등기연월일

【문13】 다음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에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문14】 다음은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종 등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종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실체가 없는 종종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종 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무인 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한 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

【문15】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분할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16】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수 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 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하기 위하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문17】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근저당권등기필증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지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만 첨부하면 족하다.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1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 ②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등기원인은 존재하나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분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갑·을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등기관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9】 다음은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갑의 금전채권자는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채납자를 대위하여 채납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문20】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
- ②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 예고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송의 원고승소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원고의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원고의 등기신청포기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그 등기신청포기서와 재판의 정본 이외에 인감증명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문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분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으로는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乙)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甲)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⑤ 원고인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2】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예고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순위보전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문2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위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이상,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4】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갑·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갑·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상권 전부를 직권말소 한다.
- ③ 갑·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고,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문25】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을은 위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6】 다음은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 ②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해 촉탁관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나, 말소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문27】 다음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환지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 ② 환지등기 촉탁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도 가능하다.
- ④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필환지라고 한다.
- ⑤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합동환지라고 한다.

【문28】 다음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1동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이 속한 동의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1동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문29】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②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③ 위 ①, ②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으로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0】 다음 중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는 것은?

-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기입등기촉탁
-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③ 매매계약서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 ④ 갑과 을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

【 공탁법 20문 】

【문31】 다음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규에 의함)

- ①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인감증명 대신 제출할 수 없다.
- ②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임장에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그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데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대신 대납한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문33】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금전소비대차채무는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제공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기한 전에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탁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가해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그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34】 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기재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된다.
-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정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은 가능하다.

【문35】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계약 외에 공탁통지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공탁공무원이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소에 제출하는 공탁물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문36】 다음 중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③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⑤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문37】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에 찍힌 인영이 공탁자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더라도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도 포함된다.
- ④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문38】 가압류해방공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 및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이 허용된다.
- ②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권자를 기재하면 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39】 공탁물의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 ② 중증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그 경우 우리나라 또는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

【문40】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4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갑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갑 또는 병
-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문4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자조매각절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 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43】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탁당사자 본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탁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공탁관계서류의 인증 사본 또는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는다.
- ⑤ 지급이 완결된 공탁에 관한 서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문44】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 ③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이 있는데,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찍거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문45】 주된 사무소가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갑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확정공탁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공탁소가 모두 기재된 것은?

<공탁소 관할>
 성남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③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④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⑤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문46】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탁할 수 있다.
- ② 선례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 ③ 납세담보공탁은 세금의 징수유예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하는 공탁이다.
- ④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문47】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선례는 부동산 공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② 공탁통지가 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 ③ 선례에 의하면,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 등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할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48】 공탁물출급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되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②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경우 그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달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⑤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49】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도 포함된다.
-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 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50】 공탁신청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각 그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인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등재되었다면 소유자 불명을 원인으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면 된다.
- 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